**※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상법상 상인 또는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한다. |
| ②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
| ③ |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④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인으로 인정된다. |
| ⑤ |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이자를 받는 대가로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2.**상법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② |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③ | 합명회사는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 ④ |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로 추정된다. |
| ⑤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

**3.**상법상 영업양도 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수인이 채무인수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상호속용은 그 속용된 상호가 양도인의 상호와 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있어 공통되면 인정될 수 있다. |
| ② | 양수인은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
| ③ | 양수인은 양도인과 함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
| ④ | 양도인은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
| ⑤ | 양수인은 양도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4.**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② |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
| ③ |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
| ④ |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후에는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도 그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
| ⑤ |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는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5.**상법상 화물상환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① | 운송인은 수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② |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
| ③ |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
| ④ |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 ⑤ |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여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6.**상법상 물건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한 최고 없이도 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한 후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
| ② |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③ | 운송인은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④ | 운송인은 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권리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
| ⑤ | 운송인은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

**7.**상법상 공중접객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② |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③ |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때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경우 그 휴대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 ④ | 공중접객업자는 고가물에 대하여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 ⑤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임치물 또는 고객의 휴대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8.**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ㄱ.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ㄴ.  운송인의 수하인에 대한 채권  ㄷ.  운송주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  ㄹ.  창고업자의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

|  |  |  |  |
| --- | --- | --- | --- |
| ① | ㄱ, ㄴ | ② | ㄴ, ㄷ |
| ③ | ㄷ, ㄹ | ④ | ㄱ, ㄷ, ㄹ |
| ⑤ | ㄴ, ㄷ, ㄹ |  |  |

**9.**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 ② |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 ③ | 사원이 회사성립 후에 사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
| ④ |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사원이 장래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 ⑤ | 해산의 사유에는 사원이 1인이 된 경우도 포함된다. |

**10.**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무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 ② |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 ③ |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
| ④ |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 ⑤ |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11.**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정관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를 기재해야 한다. |
| ② | 사원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 ③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④ |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 ⑤ | 자본금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12.**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① | 발기설립에서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 ② | 모집설립에서 이사와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 모집설립에서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과반수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에게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못한다. |
| ⑤ |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

**13.**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
| ② | 무기명주식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 ③ | 주식을 등록질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 ④ |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액면주식도 발행할 수 있다. |
| ⑤ |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공유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

**14.**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
| ② |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에서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
| ③ |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이라도 정관으로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 ④ | 회사가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
| ⑤ | 회사가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상환의 대가로 현금만을 교부할 수 있다. |

**15.**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련된 문제는 논외로 함)

|  |  |
| --- | --- |
| ① | 회사의 성립 전에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
| ② | 주주는 정관에 주권의 불소지 신고가 가능하다는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
| ③ |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 ④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주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
| ⑤ | 무효인 주권에 대하여는 주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

**16.**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 ②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지만, 그러한 주주의 직계비속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 ③ | 자기주식양도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권면액 이상이면 된다. |
| ④ |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⑤ |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도 부여할 수 있다. |

**1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련된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 |
| ② |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의사의 합치에 더하여 주권을 교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③ |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④ |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하였다면 그러한 통지를 받은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회사에게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만을 청구할 수 있다. |
| ⑤ |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18.**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자기주식 및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 ② |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관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그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 ③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인한 때에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 ④ |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A회사와 B회사가 합하여 C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졌다면 C회사는 상법의 적용에 있어 A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
| ⑤ |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

**19.**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음을 전제함)

|  |  |
| --- | --- |
| ① |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
| ② |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
| ③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
| ④ |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⑤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주주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

**20.**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주주가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 ② | 결의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 ③ | 이사선임결의에 대해 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
| ④ | 결의부존재확인소송은 결의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
| ⑤ |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그 청구를 재량으로 기각할 수 있다. |

**21.**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주주총회에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완료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주주총회에서 甲, 乙 두 개의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甲결의에 대해서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는 甲결의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乙결의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② | 주주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
| ③ |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
| ④ |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가진 경우 B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모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 ⑤ |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2.** 상법상 주식회사 관련 소송 중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의 보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  |  |
| --- | --- |
| ① |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
| ② | 자본금감소무효소송 |
| ③ | 신주발행무효소송 |
| ④ | 합병무효소송 |
| ⑤ | 분할무효소송 |

**23.**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지정할 수 없다. |
| ② |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해야 하는 때에는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지만 감사에게는 통지를 발송하지 않아도 된다. |
| ③ | 이사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없다. |
| ④ | 이사회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⑤ | 이사회 소집통지가 일부 이사에게 누락되었음에도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법상의 이사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

**24.** 상법상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신주인수로 인한 주식배정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음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한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 |
| ② | 특정한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가 필요함에도 그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관변경의 주주총회 결의만 이루어진 경우,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없다고 하여 그 정관변경의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
| ③ |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 ④ |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 ⑤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정관변경의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25.**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 ② | 회사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 이는 등기사항이다. |
| ③ |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④ |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 ⑤ |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회사에 하려면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26.**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  |  |
| --- | --- |
| ①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해태 행위를 한 이사가 회사 아닌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
| ② | 회사 설립에 관하여 임무해태 행위를 한 발기인이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
| ③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위반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
| ④ |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회사에 대해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 |
| ⑤ | 청산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

**2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① |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가 이사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할 자는 대표이사이다. |
| ② | 회사는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 |
| ③ |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병행하여 둘 수 있다. |
| ④ |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할 권리는 있지만 이사회의 모든 결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⑤ |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지만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는 없다. |

**28.** 상법상 신주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게 하여야 한다. |
| ② | 신주발행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 ③ |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
| ④ |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그 배정받은 주식수에 따른 인수가액의 납입의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
| ⑤ |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

**29.**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
| ② |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에 적어야 한다. |
| ③ |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
| ④ | 감자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이다. |
| ⑤ |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0.**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상법상 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사는 결산기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 ② |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 ③ |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
| ④ | 합병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
| ⑤ |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1.**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② |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
| ③ |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 |
| ④ |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의 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⑤ | 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회계서류인 경우에는 그 작성명의인이 반드시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국한되어야 하며, 원본에 국한되는 것이다. |

**32.** 상법상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社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
| ②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 ③ | 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되었더라도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하지 못한다. |
| ④ |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⑤ |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

**33.**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이 아닌 경우를 전제하고,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② |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
| ③ |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④ | 합병무효의 판결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판결확정전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와 그 사원 및 제3자 사이에 생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
| ⑤ |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는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34.** 상법상 회사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해산의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여야 한다. |
| ② | 휴면회사의 해산은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 ③ | 주식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④ |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 ⑤ |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이사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3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상 재무제표의 작성과 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① | 회사의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으며, 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에게는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없다. |
| ② | 모든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전에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없다. |
| ④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감사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 ⑤ |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나, 이를 복사할 수 없다. |

**36.**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② |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 ③ |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
| ④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⑤ |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가 요구하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

**37.**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ㄱ.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ㄴ.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즉시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 ㄷ.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 ㄹ.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ㄱ, ㄴ | ② | ㄱ, ㄹ | ③ | ㄴ, ㄷ | ④ | ㄴ, ㄹ | ⑤ | ㄷ, ㄹ |

**38.**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①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감사인의 업무설계와 운영에 관한 기준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업무는 할 수 없다. |
| ②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감사인 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관서의 장에게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 |
| ③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 ④ |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
| ⑤ | 금융위원회는 회계전문가인 감사인이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39.**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① | 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할 때 그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
| ② | 회계법인은 이사가 아닌 소속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③ | 미국의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는 경우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업무와 한국의 법인세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④ | A회계법인이 분할을 결정하여 B회계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 A회계법인이 분할 전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B회계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
| ⑤ |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해서는 아니된다. |

**40.**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① | 공인회계사는 서울 사무소와 지방 사무소를 동시에 둘 수 있다. |
| ② | A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는 A회계법인의 사원뿐만 아니라 이사도 될 수 있다. |
| ③ | B공인회계사는 甲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甲회사의 내부감사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
| ④ | C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乙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이 있는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C공인회계사는 乙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乙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⑤ | 공인회계사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업무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할 수 있다. |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1.**「국세기본법」상 총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불복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 ②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
| ③ |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로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경우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고, 과세관청이 납부고지서를 우편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
| ④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법인이 아닌 재단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지 않아도 법인으로 본다. |
| ⑤ |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고, 과세관청이 송달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여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서류를 확인한 때 송달한 것으로 본다. |

**2.**「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 ② | 법인은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및 영농·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 ③ |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회사는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 ④ |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⑤ |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 ② | 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였을 때 확정된다. |
| ③ |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
| ④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시효의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지만, 국세징수의 소멸시효는 시효의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다. |
| ⑤ | 납세자가 신고하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

**4.**「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국내원천 이자소득만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와 다르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이루어져 세액이 감액된 경우 경정청구는 원천징수대상자만 가능하다. |
| ②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중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 ③ |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 ④ | 기한 후 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 ⑤ |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5.** 거주자 갑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A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X를 2024년 5월 15일 거주자 을에게 양도하였다. 거주자 을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상태이며, 을의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장이 주택X를 압류하여 2025년 1월 5일 8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주택X의 매각금액 중 A은행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저당권 설정은 짜고 한 거짓 계약이 아니다.

|  |  |  |  |
| --- | --- | --- | --- |
| 구 분 | | 금 액 | 기준일 |
| 갑 | 부가가치세 체납 | 35,000,000원 | 2024.1.25.(법정기일) |
| A은행 대출금 | 50,000,000원 | 2024.4.4.(저당권설정일) |
| 을 | 소득세 체납 | 40,000,000원 | 2024.3.10.(법정기일) |
| 종합부동산세 체납 | 11,500,000원 | 2024.12.15.(법정기일) |

|  |  |  |  |  |  |
| --- | --- | --- | --- | --- | --- |
| ① | 0원 | ② | 5,000,000원 | ③ | 28,500,000원 |
| ④ | 33,500,000원 | ⑤ | 50,000,000원 |  |  |

**6.**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의 제25기(2025.1.1.∼2025.12.31.) 회계처리 내역이다. 제25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옳은 것은?

|  |  |
| --- | --- |
| ①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A가 제조한 식품을 같은 법에 따른 제공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고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 1,200만원을 비용처리하였다. |
| ② | 환경미화를 위해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1점을 800만원에 구입하고 비용처리하였다. |
| ③ | 지분율 40%를 보유하고 있는 ㈜B 주식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000만원을 지분법손실로 비용처리하였다. |
| ④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장체육비 500만원을 비용처리하였다. |
| ⑤ |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학자금 1,500만원(임직원의 사망 전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을 따른 금액임)을 비용처리하였다. |

**7.**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5기(2025.1.1.～2025.12.31.) 자료이다. 의제배당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A는 ㈜B가 잉여금 자본전입(결의일: 2025.11.23.)으로 액면발행한 무상주 중 10%를 지분비율에 따라 수령하였으며, 무상증자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주식발행초과금\* | 24,000,000원 | | 자기주식처분이익 | 14,000,000원 | | 자기주식소각이익\*\* | 10,000,000원 |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5,000,000원 | | 이익준비금 | 15,000,000원 | | \* 이 중 8,000,000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초과금임  \*\* ㈜B의 자기주식 소각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상주의 60%는 소각일부터 2년 이내 자본전입분이고 나머지는 2년 경과 후의 자본전입분임 | |   (2)  ㈜B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없다.  (3)  ㈜A는 무상주를 수령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2,900,000원 | ② | 3,500,000원 | ③ | 3,700,000원 |
| ④ | 4,000,000원 | ⑤ | 4,300,000원 |  |  |

**8.**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5기(2025.1.1.∼2025.12.31.) 청산소득 관련 자료이다. 청산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A는 제25기 말 해산하기로 결의한 후 청산절차를 착수하였으며, 해산등기일(2025.12.31.) 현재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재무상태표 (단위: 원) | | | | | | | 재고자산 |  | 50,000,000 | 차입금 |  | 150,000,000 | | 건물 |  | 100,000,000 | 자본금 |  | 100,000,000 | | 토지 |  | 250,000,000 | 자본잉여금 |  | 70,000,000 | |  |  |  | 이익잉여금 |  | 80,000,000 | | 합계 |  | 400,000,000 | 합계 |  | 400,000,000 |   (2)  재고자산, 건물, 토지는 각각 60,000,000원, 150,000,000원, 300,000,000원으로 환가되었으며, 차입금은 150,000,000원으로 상환하였다.  (3)  제25기 말 현재 세법상 이월결손금 잔액은 180,000,000원이며, 유보 및 △유보 잔액은 없다.  (4)  2024년 중 자본잉여금 20,000,000원을 자본금에 전입하였다.  (5)  본 해산은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것이 아니며, 법령 등에 따라 청산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270,000,000원 | ② | 280,000,000원 | ③ | 290,000,000원 |
| ④ | 300,000,000원 | ⑤ | 310,000,000원 |  |  |

**9.**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의 제25기(2025.1.1.∼2025.12.31.)에 발생한 화재 관련 자료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025년 2월 화재로 인한 사업용자산 가액 변동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 분 | 화재 전 장부가액 | 화재 후 장부가액 | | 재고자산 | 50,000,000원 | 10,000,000원 | | 차량운반구 | 120,000,000원 | 70,000,000원 | | 건 물 | 200,000,000원 | 100,000,000원 | | 토 지 | 300,000,000원 | 300,000,000원 |   (2)  당해 화재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50,000,000원이다.  (3)  상기 자산과는 별도로 ㈜A가 보관중인 30,000,000원의 타인 소유 기계장치가 화재로 전부 멸실되었으며, 동 자산에 대한 변상책임은 ㈜A에게 있다.  (4)  화재 발생일 현재 법인세 미납액은 11,000,000원(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1,000,000원이 포함됨)이다.  (5)  당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은 20,000,000원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액 1,000,000원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액 2,000,000원이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14,400,000원 | ② | 14,850,000원 | ③ | 15,400,000원 |
| ④ | 15,950,000원 | ⑤ | 16,500,000원 |  |  |

**10.**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의 제25기(2025.1.1.～2025.12.31.) 자료이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으로 옳은 것은? 단,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다.

|  |  |  |  |  |
| --- | --- | --- | --- | --- |
| (1)  장부상 매출액은 18,000,000,000원(중단사업부문 매출액 3,000,000,000원 포함됨)으로 이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은 2,000,000,000원이다.  (2)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 중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120,000,000원으로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① 임직원 단합대회를 위하여 지출한 행사비: 10,000,000원  ②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비: 6,000,000원  ③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 목적 과일 구입비: 9,000,000원  (3)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수입금액 | 적용률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000만원+(수입금액-100억원)×0.2% |   (4) ㈜A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50% 축소 대상 법인이 아니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16,600,000원 | ② | 17,760,000원 | ③ | 22,600,000원 |
| ④ | 23,760,000원 | ⑤ | 24,360,000원 |  |  |

**11.**「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및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경우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
| ②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취득가액은 영(0)원으로 한다. |
| ③ |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금융채무등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 ④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대금을 해당 사업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
| 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12.**「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지배주주등인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②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는 알선수수료‧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 |
| ③ |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되,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를 하지 않는다. |
| ④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⑤ |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

**13.**「법인세법」상 중간예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 |
| ② |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
| ③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할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
| ④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 ⑤ |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포함하나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

**14.**「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①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포함된다. |
| ② | 파산선고에 의해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
| ③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인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 ④ |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6개월 보유한 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⑤ |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사택제공기간 12년)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15.**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5기(2025.1.1.∼2025.12.31.) 세무조정 관련 사항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재될 차가감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00,000,000원  (2)  비용으로 처리된 사업용 공장건물에 대한 재산세: 7,000,000원  (3)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15,000,000원  (4)  비용으로 처리된 법인세: 8,000,000원  (5)  수익으로 처리된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금 이자: 2,000,000원  (6)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된 자기주식처분이익: 9,000,000원  (7)  수익으로 처리된 정기예금 미수이자\*: 4,000,000원  \* 만기 2026년 3월 31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수령하는 조건임  (8)  비용으로 처리된 대표이사 종친회 기부금: 5,0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① | 111,000,000원 | ② | 116,000,000원 | ③ | 121,000,000원 |
| ④ | 126,000,000원 | ⑤ | 131,000,000원 |  |  |

**16.**「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 ③ |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 ④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 ⑤ | 국세청장은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

**17.**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5기(2025.1.1.～2025.12.31.)에 발생한 상호 독립적인 자료이다. ㈜A가 세무조정할 금액의 순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1)  보통주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발행주식의 액면가액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2,000,000원까지 포함하여 주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112,000,000원을 모두 회계상 자본금으로 계상하였다.  (2)  특수관계가 없는 ㈜B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토지의 시가는 15,000,000원이며, ㈜A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없다.  (3)  제24기에 결산상 누락된 외상매출금 7,000,000원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하였고, 제25기에 해당 외상매출금 7,000,000원을 회수하여 잡이익으로 계상하였다.  (4)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20,0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8,000,000원 | ② | (+)2,000,000원 | ③ | (-)2,000,000원 |
| ④ | (-)4,000,000원 | ⑤ | (-)12,000,000원 |  |  |

**18.**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5기(2025.1.1.∼2025.12.31.) 일시상각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제25기 말 일시상각충당금 △유보 잔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1)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기계장치X(취득가액 1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0원, 세무상 상각부인액 10,000,000원)가 멸실되었다.  (2)  기계장치X에 대한 보험금 80,000,000원을 수령한 후 40,000,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2025년 7월 1일에 보험금수령액 중 70,000,000원으로 동일 종류의 기계장치Y를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감가상각비로 1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4)  기계장치Y는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신고내용연수 5년, 상각률 0.200)을 적용한다.  (5)  ㈜A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기계장치 추가 취득계획은 없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18,000,000원 | ② | 19,000,000원 | ③ | 20,000,000원 |
| ④ | 27,000,000원 | ⑤ | 30,000,000원 |  |  |

**19.**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5기(2025.1.1.∼2025.12.31.) 사업용자산 관련 자료이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이 ㈜A의 제25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025년 1월 1일 현재 사업용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 분 | 건 물 | 차량운반구 | | 취득일 | 2024.1.1. | 2024.1.1. |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정률법 | | 신고내용연수 | 20년 | 5년 | | 취득가액 | 300,000,000원 | 200,000,000원 | | 감가상각누계액 | 37,500,000원 | 90,200,000원 | | 상각부인액 | 22,500,000원 | - |   (2)  당기 사업연도에 ㈜A는 「법인세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물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  (3)  ㈜A의 당기 감가상각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① 건물 |  | | (차) 감가상각비 37,500,000원 | (대) 감가상각누계액 37,500,000원 | | ② 차량운반구 |  | | (차) 감가상각비 27,450,000원 | (대) 감가상각누계액 27,450,000원 |   (4)  ㈜A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내용연수별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내용연수 | 4년 | 5년 | 9년 | 10년 | | 정액법 | 0.250 | 0.200 | 0.111 | 0.100 | | 정률법 | 0.528 | 0.451 | 0.284 | 0.259 | |

|  |  |  |  |  |  |
| --- | --- | --- | --- | --- | --- |
| ① | (+)7,500,000원 | ② | (+)10,000,000원 | ③ | (+)10,500,000원 |
| ④ | (+)12,990,000원 | ⑤ | (+)15,990,000원 |  |  |

**20.**「소득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① | 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 거주자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
| ③ |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지 지정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
| ⑤ |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직권으로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 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21.** 거주자 갑(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음)의 2025년 금융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금융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  |
| --- |
| (1)  비영업대금의 이익: 3,000,000원(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2)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4,000,000원  (3)  비상장내국법인이 지급한 무상주: 1,000주(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것이며, 주당 액면가 5,000원, 주당 시가 6,000원임)  (4)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 11,000,000원  (5)  상장내국법인이 지급한 현금배당금: 1,000,000원  (6)  소득세법시행령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18,000,000원\*  \* 거래소 상장주식 매매차익 3,000,000원과 배당소득 15,000,000원으로 구성되며 수수료는 차감된 금액임 |

|  |  |  |  |  |  |
| --- | --- | --- | --- | --- | --- |
| ① | 28,000,000원 | ② | 28,600,000원 | ③ | 39,000,000원 |
| ④ | 39,600,000원 | ⑤ | 39,800,000원 |  |  |

**22.**「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일정한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③ |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
| ④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
| 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

**23.**「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대금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다. |
| ② |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 ③ |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 ④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⑤ | 거주자가 채권을 발행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의 발행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

**2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남성)의 2025년 소득공제에 관한 자료이다. 갑의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본인 및 부양가족 현황(부양가족은 갑과 생계를 같이함)   |  |  |  | | --- | --- | --- | | 구 분 | 나 이 | 내 역 | | 본인 | 29세 | 총급여액 50,000,000원 | | 부친 | 72세 | 은행예금이자 7,000,000원 | | 모친 | 65세 | 소득 없음 | | 동생 | 20세 | 총급여액 3,000,000원 |   (2)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  |  | | --- | --- | | 구 분 | 내 역 | | 본인 | · 대중교통 이용액: 1,500,000원  · 영화상영관 입장료: 1,000,000원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 700,000원  · 자동차세 신용카드 결제액: 400,000원  · 국내 백화점 물품 구입 신용카드 결제액: 10,000,000원 | | 부친 | · 병원비 신용카드 결제액: 3,000,000원 | | 모친 | · 전통시장 사용액: 4,000,000원 | | 동생 | · 직불카드 사용액: 2,5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① | 6,100,000원 | ② | 8,575,000원 | ③ | 9,325,000원 |
| ④ | 9,575,000원 | ⑤ | 10,325,000원 |  |  |

**25.**㈜A에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025년 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갑의 총급여액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은 ㈜A의 지배주주이며 대표자이다.

|  |
| --- |
| (1)  기본급: 100,000,000원  (2)  직장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 3,000,000원  (3)  ㈜A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5,000,000원  \* 갑은 2025년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A의 결산확정일은 2026년 3월 30일임  (4)  운전보조금(자가운전 아님): 2,400,000원(월 200,000원×12개월)  (5)  여비(업무와 무관함): 4,000,000원  (6)「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7,000,000원\*  \*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임  (7)  사택 제공이익: 20,000,000원(㈜A의 주택을 갑에게 무상제공함) |

|  |  |  |  |  |  |
| --- | --- | --- | --- | --- | --- |
| ① | 118,400,000원 | ② | 131,400,000원 | ③ | 133,400,000원 |
| ④ | 138,400,000원 | ⑤ | 141,400,000원 |  |  |

**26.** ㈜A에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갑의 2025년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기타소득의 실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았다.

|  |
| --- |
| (1)  업무와 관련된 사내 원고료: 1,500,000원  (원고제공일: 2024.12.28., 현금수령일: 2025.1.20.)  (2)  업무와 관련된 연구활동비: 1,200,000원  (3)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 10,000,000원  (양수인 사용일\*: 2024.11.25., 대금청산일: 2025.2.1.)  \* 동 일자에 대금이 확정됨  (4)「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의 환급금: 2,000,000원\*  \*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1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  (투표권적중일: 2024.12.1., 현금수령일: 2025.1.5.)  (5)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위약금: 1,000,000원  (계약금수령일: 2024.12.10., 계약의 위약확정일: 2025.1.10.)  (6) 주택입주 지체상금: 1,500,000원(현금수령일: 2025.5.10.) |

|  |  |  |  |  |  |
| --- | --- | --- | --- | --- | --- |
| ① | 460,000원 | ② | 480,000원 | ③ | 1,260,000원 |
| ④ | 1,340,000원 | ⑤ | 1,460,000원 |  |  |

**27.**「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던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
| ② | 거주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 ③ |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아도 퇴직으로 보아야 한다. |
| ④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 ⑤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28.**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일용근로자 아님)의 2025년 세액공제에 관한 자료이다. 갑의 특별세액공제 금액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본인 및 부양가족 현황(부양가족은 갑과 생계를 같이함)   |  |  |  | | --- | --- | --- | | 구 분 | 나 이 | 내 역 | | 본인 | 50세 | 총급여액 60,000,000원 | | 배우자 | 45세 | 소득 없음 | | 딸 | 15세 | 장애인, 소득 없음 |   (2) 갑의 지출 내역(교육비는 지원금 차감 전 금액임)   |  |  | | --- | --- | | 구 분 | 내 역 | | 본인 |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육비\*: 1,200,000원     \*「고용보험법」에 따라 1,000,000원을 지원받음  ·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800,000원 | | 배우자 | · 생명보험료(보장성보험): 500,000원 | | 딸 | · 장애인특수교육비\*: 5,000,000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3,000,000원을 지원받음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200,000원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0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① | 615,000원 | ② | 645,000원 | ③ | 690,000원 |
| ④ | 705,000원 | ⑤ | 885,000원 |  |  |

**29.**거주자 갑의 2025년 양도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토지X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  |
| --- |
| (1)  갑은 2015년 2월 토지X를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입하였다. 취득시 실거래가는 400,000,000원이고, 개별공시지가는 300,000,000원이다.  (2)  2025년 12월 갑은 토지X를 동생 을에게 증여하였으며, 을은 토지X를 증여받고 상기 차입금 200,000,000원을 인수\*하였다. 증여시 토지X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시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개별공시지가는 500,000,000원이다.  \*  을의 차입금 인수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고, 을은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음  (3)  토지X의 실제 자본적지출은 10,000,000원이며, 필요경비개산공제율은 3%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이다. 갑은 토지X 외 부동산거래를 하지 않았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36,400,000원 | ② | 58,620,000원 | ③ | 61,120,000원 |
| ④ | 89,180,000원 | ⑤ | 91,680,000원 |  |  |

**30.**「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사업자가 온라인 사설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승용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 ② | 사업자가 상가건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 ③ |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 ④ |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 ⑤ | 영리를 목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31.**「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ㄱ.「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ㄷ.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ㄹ.  학술 등 연구단체가 면세를 포기하고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ㅁ.「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 자가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① | ㄱ, ㅁ | ② | ㄴ, ㅁ | ③ | ㄷ, ㄹ |
| ④ | ㄱ, ㄷ, ㄹ | ⑤ | ㄴ, ㄹ, ㅁ |  |  |

**32.**「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①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 ② |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구분하여 적고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 ③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 ④ |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한다. |
| ⑤ |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33.**㈜A(자동차판매업)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관련 내역이다. ㈜A의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공급가액으로 옳은 것은? 단, 이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  |
| --- |
| (1)  2024년 2월 5일에 국내 사업자로부터 승용자동차X를 판매 목적으로 2대(대당 20,000,000원) 구입하였다. 2025년 10월 15일에 승용자동차X 중 1대는 시가 25,000,000원에 판매하였고, 같은 날에 나머지 1대는 출장 등 업무 목적으로 전용하였다.  (2)  2024년 9월 5일에 국내 사업자로부터 승용자동차Y를 출장 등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2대(대당 30,000,000원) 구입하였다. 2025년 12월 15일에 승용자동차Y 중 1대는 시가 20,000,000원에 판매하였고, 같은 날에 나머지 1대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거래처에 증여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50,000,000원 | ② | 65,000,000원 | ③ | 70,000,000원 |
| ④ | 85,000,000원 | ⑤ | 90,000,000원 |  |  |

**34.**「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① |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 ②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 ③ | 2024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5년 제1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 ④ |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 ⑤ |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가를 수령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35.**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A의 2025년 제2기 매입거래 내역이다. 2025년 제2기 매입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  |
| --- |
| (1)  본사 사옥으로 사용할 예정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기계장치를 장기할부로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단, 이 중 5,000,000원은 약정에 의한 할부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  (3)  유류비를 지급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880,0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가치세 구분 표시)를 수령하였다. 단, 이 중 220,000원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유류비이고, 나머지는 제품 운반용 트럭에 대한 유류비이다.  (4)  거래처에 증정할 물품을 구입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1,650,0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가치세 구분 표시)를 수령하였다.  (5)  종업원에게 나눠줄 창립기념일 선물(1인당 100,000원 상당액임)을 구입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3,300,000원의 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구분 표시)을 수령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1,860,000원 | ② | 2,060,000원 | ③ | 2,360,000원 |
| ④ | 2,380,000원 | ⑤ | 3,380,000원 |  |  |

**36.**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A의 자료이다.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고려한 2025년 제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모든 과세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25년 제2기 예정신고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025년 4월 5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품을 5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2025년 7월 15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2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3)  2025년 10월 25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품 운반용 트럭을 2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4)  2025년 제2기 확정신고에 포함될 실지귀속이 분명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1,800,000원이며, 이 중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2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5)  2025년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기 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 1월 ∼ 3월 | 50,000,000원 | 50,000,000원 | | 4월 ∼ 6월 | 60,000,000원 | 40,000,000원 | | 7월 ∼ 9월 | 70,000,000원 | 30,000,000원 | | 10월 ∼ 12월 | 60,000,000원 | 40,0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① | 2,325,000원 | ② | 2,725,000원 | ③ | 3,525,000원 |
| ④ | 3,725,000원 | ⑤ | 4,325,000원 |  |  |

**37.**「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①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 ②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 ③ | 배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0.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 ④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 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38**.  거주자 갑의 증여세 관련 자료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  |
| --- |
| (1)  갑(32세)은 2024년 1월 15일에 결혼(당일 혼인신고함)하고 2025년 2월 27일에 자녀를 출산(당일 출생신고함)하였다.  (2)  2025년 7월 2일에 아버지 을로부터 시가(감정가액) 500,000,000원의 아파트X를 증여받았으며, 이를 담보로 한 은행차입금 200,000,000원을 인수(차입금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됨)하였다.  (3)  증여세 신고를 위해 갑이 지불한 감정평가수수료는 6,000,000원이다.  (4)  갑은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144,000,000원 | ② | 145,000,000원 | ③ | 244,000,000원 |
| ④ | 245,000,000원 | ⑤ | 345,000,000원 |  |  |

**39**.「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단,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모두 거주자로 가정한다.

|  |  |
| --- | --- |
| ①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 ②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신탁(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함)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 ③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며, 그 가산하는 금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
| ④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 그 공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
| ⑤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증빙서류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

**40.**「지방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취득세에서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며,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
| ② | 부담부 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 ③ |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포함한다. |
| ④ |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재산세의 징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
| ⑤ |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그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이다. |

|  |
| --- |
|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

-끝-